#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31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73	이언주의원	2024.0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2024.11.22.) 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90	오세희의원	2024.11.19.	-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11. 28.)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부터 지정의 절차까지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기업등에 대한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신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1년"을 각각 "1년 6개월"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
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	) ①
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	
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
	표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	
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	
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	
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u>.</u>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1
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u>1년</u> 이 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 는 업종·품목

- 2. (생략)
-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 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 ~ ⑦ (생략)

	<u>1년 6개</u>
	월
2.	(현행과 같음)
3.	
	1년 6개월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 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제3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수 없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
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
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 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 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신 설>

- <u>①</u>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